

#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진혁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90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5월 26일  
발 의 자: 최진혁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김규남,  
김영철, 김용호,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유만희, 윤기섭,  
윤종복, 이봉준, 이상욱,  
이성배, 이종태, 이종환,  
임춘대, 최민규 의원(23  
명)

## 1. 제안이유

- 상위법의 유효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수요도 여전히 높은 현실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고, 한시적인 특별법이라는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적용 대상을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음. 이에 따라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혼선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현행 조례의 유효기간을 시행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조례 제8963호 부칙 제2조)
- 나. 조례의 적용 대상을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으로 한정함(안 부칙 제2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8963호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 중 “2년”을 “4년”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 관한 특례)

이 조례는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서울특별시조례 제8963호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부칙</p> <p>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행 후 <u>2년</u>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p>	<p>서울특별시조례 제8963호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부칙</p> <p>제2조(유효기간) -----                      -- <u>4년</u>-----                      -----.</p>

#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대상 사유서

##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유효기간 2년 연장)에 따라 조례 제2조(유효기간)의 내용을 상위법과 정합성 유지 등을 위하여 개정(2년 → 4년)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김    진    형

☎ 02-2180-7954

e-mail : kjh0816@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